

# 단국대학교 대학원 공공관리학과 내규

2018년 1월 27일 초안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따라 공공관리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공공관리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학부연계과정 포함)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장 입학

### 제3조 (학생모집과 전형)

공공관리학과 소속 교수들은 공공관리학과 석·박사 및 통합학위과정(학부연계과정 포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학생의 모집에 노력하며, 입학 전형에 참여한다.

## 제3장 교과과정운영

### 제4조 (교과목 배정과 수강지도)

- ① 교과목은 개설전공을 고려하여 학생중심으로 설강한다.
- ② 교과목(강의) 배정에 있어 학과교수는 물론, 외부 교수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도 개방한다. 전문가라 함은 해당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말한다.
- ③ 지도교수는 학생이 전공과 부합되는 교과목들을 체계적으로 이

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강지도 한다.

#### **제5조 (학기 당 개설 교과목 수)**

학기 당 개설 교과목은 5과목 내외로 한다.

#### **제6조 (연구지도 세미나)**

공공관리학과 소속교수들은 연구지도 세미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수업 및 토론이 진행되도록 한다.

#### **제7조 (타 학과 연계수강)**

학생의 연구 분야가 학제 간 융·복합 영역으로 확대되어 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 이외의 수강이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는 주임교수와 협의하고 주임교수는 해당분야 학과 및 대학원 교학과와 협의하여 타 학과 교과목을 연계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타 학과 연계수강 교과목은 학기당 1과목, 전체 학위과정 중 3과목을 넘을 수 없다.

### **제4장 논문지도**

#### **제8조 (지도교수의 선정)**

지도교수의 선정은 학생의 전공희망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9조 (지도교수의 정년 자격상실)**

교수는 정년과 동시에 지도교수 자격을 상실한다.

### **제5장 종합학력시험 중 전공자격시험**

#### **제10조 (전공자격시험 과목과 합격기준)**

전공자격시험의 과목은 학생이 수강한 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응시하며, 합격기준은 대학원 학칙에 준한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는 24학점, 박사는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 전공자격시험은 2과목으로 하고,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 득

한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박사학위 전공자격시험은 4과목으로 하고,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

득한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④ 통합학위과정 전공자격시험은 박사학위과정에 준한다.

⑤ 과목낙제의 경우 다음 학기에 해당과목을 다시 치르며, 모든 과목에 합격할 때까지

학위 심사 청구 논문을 제출 할 수 없다.

#### **제11조 (전공자격시험 출제 및 채점)**

모든 시험과목의 출제와 채점은 최근 당해 과목의 강의를 담당했던 교수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사항은 주임교수가 조정하여 결정한다.

#### **제12조 (전공자격시험 면제요건)**

전공자격시험 시행 직전 월 (즉, 2월 또는 8월)까지 SCI, SCIE, SSCI, A&HCI, SCOPUS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교신저자, 제1저자포함)에 단독 또는 공공관리학과 전임교수와 공동(2인 공저)논문 1편을 게재하거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에 단독 또는 공공관리학과 전임교수와 공동(2인 공저)논문 2편을 게재한 경우, 전공자격시험 신청만으로 전공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전공자격시험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한다.

### **제6장 학위 심사 청구 논문 제출 및 심사**

#### **제13조 (박사학위 심사 청구 논문 제출자격)**

대학원 학칙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전공자격시험에 합격한

박사과정 5학기 이상의 학생은 박사학위 심사 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박사학위 논문 심사과정은 1) 연구계획서발표 2) 논문예비발표 3) 논문심사의 순서로 진행된다.

#### 제14조 (연구계획서 (Proposal)의 발표)

① 연구계획서에는 논문제목, 목차,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범위, 이론적 배경, 분석의 틀과 구체적인 연구방법, 예상 결과 및 참고문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표일로부터 2주전까지 연구계획서 10부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해당 연구계획서가 발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발표자는 연구계획서 발표과정에서 학과교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③ 주임교수는 학기 초에 연구계획서 발표일을 공지하여야 하며, 학과 교수는 연구계획서 발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연구계획서 발표에는 학생 전원이 출석하여 참관하고 연구계획서의 발전을 위해 질의할 수 있다.

#### 제15조 (논문의 예비발표)

① 연구계획서를 발표한 학생이 논문 예비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논문예비발표 직전 월까지 SCI, SCIE, SSCI, A&HCI, SCOPUS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교신저자, 제1저자포함)에 단독 또는 공공관리학과 전임교수와 공동(2인 공저)논문 1편을 게재하거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에 단독 또는 공공관리학과 전임교수와 공동(2인 공저)논문 2편을 게재하여야 한다. 내규 제12조에 따라 전공자격시험 면제를 받은 학생은 논문예비발표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② 발표자는 발표일로부터 2주전까지 완성된 논문 10부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8월 졸업의 경우에는 같은 해 3월까지, 그리고 2월 졸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9월까지 예비발표를 통과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해당논문이 예비발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④ 주임교수는 학기 초에 논문 예비 발표일을 공지하여야 하며, 학과 교수는 논문 예비발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예비발표에서 논문의 완성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차기에 수정 발표를 명할 수 있다. 논문 예비발표에는 학생 전원이 출석하여 참관한다.

### 제16조 (논문심사)

① 예비발표신청 이후 학생의 지도교수는 대학원 학칙에 따라 논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심사는 공공관리학과 교수 3인, 외부교수 2인이 한다.

### 제17조 (석사학위 청구 논문의 심사)

①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과정은 박사과정과 마찬가지로 1) 연구계획서발표 2) 논문예비발표 3) 논문심사의 순서로 진행되며, 다만 논문예비발표를 위한 학술지 게재요건은 면제한다.

② 석사학위 청구 논문의 심사는 공공관리학과 교수 2인, 외부교수 1인이 한다.

③ 석사학위 심사 청구 논문 외에 전공분야 연구논문으로도 석사학위를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심사는 공공관리학과 교수 3인이 한다.

## 제7장 의결

###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은 공공관리학과 교수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 1/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